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9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이희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유만희, 이민석, 이봉준, 이상욱, 이종환, 정지웅,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2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공공건축 사업 및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요청 시기를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으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공공건축심의 이전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국고보조금 손실이 우려되는바, 상위법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제4항을 준용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수행의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설정하여 신속한 행정절차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시 국가정책사업의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 사업계획서 첨부 및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국가정책 사업(개축 등)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④ 교육감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p>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p> <p>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p>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p>	<p style="text-align: center;"><③항 4호 신설></p> <p>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국가정책 사업(개축 등)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p>